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17

대 전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284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대창에이티
피 고	서산시장
변 론 종 결	2017. 9. 7.
판 결 선 고	2017. 9.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추징 1,591,761,600원, 지방교육세 추징 159,176,16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17

원고는 2013. 8. 19. 기아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서산시 지곡면 무장면 1794 공장용지 265,759.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39,794,040,000원에 취득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에 기해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로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원고는 2015. 5.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포스코피앤에스(이하 '포스코피앤에스'라고 한다)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5. 6. 1. 포스코피앤에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 기해 면제한 취득세 1,591,761,600원, 지방교육세 159,176,160원 합계 1,750,937,760원을 납부하도록 안내하였고, 원고는 2015. 6. 12. 이를 납부하였다.

원고는 2016. 10. 5. 피고에게, 포스코피앤에스가 이 사건 매매계약 전부터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매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추징세액을 0원으로 경정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6. 10. 20. 이 사건 매매계약이 추징대상인 매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포스코피앤에스는 원고의 발행주식 2,022,078주 중 60.12%인 1,215,277주를 보유하는 과점주주로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했을 때부터 이 사건 토지의 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17

질적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과 같이, 공부상 소유명의자로부터 실제 소유자 앞으로의 소유권 환원에 해당하고, 감면 취득세 추징사유인 매각이라고 볼 수 없다. 과점주주의 취득세 2차 납세의무를 인정하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된 자에게 간주취득세 납부의무를 인정하여 취득세 납부에 있어서 과점주주와 회사를 동일시하고 있는 지방세법의 취지를 보아도 그러하다.

나.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7091 판결 등에 따르면 주식회사가 자사주를 매수하는 경우 주식을 소각하면 그 매수대금의 지급은 자본의 환급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과점주주인 포스코피앤에스에게 자본을 환급하면서 출자금 대신 현물인 이 사건 토지를 환급해 준 것이므로, 감면 취득세 추징사유인 매각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경위 및 소유권 이전 경위를 모두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부득이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

3. 판단

가. 위 각 증거, 갑 제4,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주식회사 포스틸은 2010. 12. 29. 원고의 신주 104,166주를 4,999,968,000원에 인수하였고, 포스코피앤에스(주식회사 포스틸에서 법인명 변경)는 2011. 6. 17. 원고의 신주 1,111,111주를 59,999,994,000원에 인수하였다. 그리하여 원고의 발행주식 2,022,078주 중 60.1%인 1,215,277주를 포스코피앤에스가 보유하게 되었다.

2) 원고는 2015. 4. 6.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발행주식 총수 중 보통주식 1,013,716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17

주를 주주들로부터 매수하여 임의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감소를 하기로 의결하였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40,211,904,372원으로 정하고, 위 매매대금과 원고의 2015. 4. 6.자 유상감자결정(감자기준일 2015. 5. 7.)에 따라 포스코피앤에스가 원고에게 갖는 40,211,904,372원의 유상감자대금 채권을 상계하여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포스코피앤에스가 원고의 과점주주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포스코피앤에스였다고 볼 수 없다.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47조에서 정한 2차 납세의무는 본래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징수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부족액에 한하여 과점주주 등이 2차 납세의무를 진다는 내용일 뿐, 위 2차 납세의무자를 1차 납세의무자와 동일시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없다.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 취득세 제도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그 과점주주도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는 내용일 뿐, 그 부동산이 더 이상 법인의 소유가 아니라 과점주주의 소유인 것으로 간주된다거나, 법인과 과점주주를 동일시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와 포스코피앤에스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원고가 포스코피앤에스에게 가지는 40,211,904,372원의 매매대금 채권과 포스코피앤에스가 원고에게 가지는 40,211,904,372원의 유상감자대금 채권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던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타인에게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매매의 실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주주인 포스코피앤에스로부터 주식을 매수하여 임의소각하기는 하였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17

만,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주식매매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므로 위 주식매매계약이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격을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주식의 매도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정한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7091 판결은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이나 형식이 전형적인 매매계약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매매대금 지급 방법으로 서로 다른 두 채권을 전제로 한 상계의 방식을 취한 점, 포스코피앤에스가 처음 원고의 주식을 취득할 때 이 사건 토지를 현물 출자한 것이 아닌 점, 원고의 임시 주주총회에서도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하여 임의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한다는 내용만 의결되었고, 주주들에게 출자금 대신 이 사건 토지 등의 현물을 돌려준다는 내용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자본 환급 과정에서 출자금 대신 이 사건 토지를 환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경위 및 소유권 이전 경위를 모두 알고 있었더라도, 원고가 선택한 법률관계의 형식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이 형식과 다르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다. 원고가 사업상 필요성 때문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부득이한 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고, '부득이한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을 법적 근거도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매각'에 해당하므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옳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17

재판장 판사 심준보

판사 이주연

판사 손호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17

별지

관련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17

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47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지방세(둘 이상의 지방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하는 지방세를 말한다)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한도 내에서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17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을 때

2. 법률 또는 법인의 정관에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